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2. 2 선고 2020가단37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1. 19.

판결 선고 2021. 2. 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국현

별지